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

1. 중대재해처벌법 개요
2.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
3.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

대한안전교육협회
KOREA SAFETY EDUCATION ASSOCIATION

1. 중대재해처벌법 개요

1) 제정 배경

가. 중대산업재해

▶ 사업주, 법인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

나. 중대시민재해

▶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

다. 중대재해처벌법

▶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
→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

▶ 중대재해 사고 방지

▶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틀

라.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과 적용

▶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강화

▶ 안전투자 확대를 통한 중대산업재해 예방

▶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

▶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적용

마.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

▶ 사망 시 ,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

▶ 그 외 재해,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

▶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

▶ 5년 이내 재범 시 혐의 ½ 까지 가중

▶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사망 시 50억 원 이하의 벌금

▶ 그 외의 재해에 대해서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

2) 법의 주요 개념과 내용

가. 중대산업재해

▶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,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, 1년 간 동일

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해당함

나.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직업성 질병의 종류

▶ 급성 중독 /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/ 스티븐슨존슨 증후군

▶ 독성간염

▶ 혈액전파성 질병 (B형 간염, c형 간염, 매독, 후천성면역결핍증에 한함)

▶ 렙토스피라증 / 탄저 · 단독 · 브루셀라증 / 레지오넬라증

▶ 감압병 · 공기색전증 / 산소결핍증 / 급성 방사선증 · 무혈성 빈혈

▶ 열사병

다. 종사자

-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종사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

▶ 「근로기준법」상의 근로자

▶ 노무를 제공하는 자

▶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

라. 사업주・경영책임자 등

가) 사업주

▶ 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

▶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

나) 경영책임자 등

▶ 사업을 대표 ·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

▶ 이에 준하여 안전 ·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

▶ 중앙 행정기관, 자치 단체, 지방 공기업의 장, 공공기관의 장 포함

마. 중대재해로 인한 배상 책임

▶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

▶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

바.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・사항

▶ 사업주, 법인 및 기관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사업 소요 비용 지원

▶ 관련 상황에 대해 반기별로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

3)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

가.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

가) 대상

구분	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	산업안전보건법
처벌대상	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법인	사업주 (법인사업주+개인사업주, 행위자)
보호대상	근로자, 노무제공자, 수급인,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	근로자, 수급인의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
적용범위	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	전 사업장
제3자로부터의 노무 제공 유형	도급, 위탁, 용역	도급

나) 의무내용

구분	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	산업안전보건법
의무내용	**▶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·보건 확보 의무** **-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**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·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	**◆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** **▶ 사업주의 안전조치** ①프레스·공작기계 등 위험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 시 ②굴착·발파 등 위험한 작업 시 ③추락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**▶ 사업주의 보건조치** ①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 ②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한 작업 ③ 환기·청결 등 적정기준 유지

다) 재해정의

구분	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	산업안전보건법
재해 정의	❖중대산업재해 ✓사망자가 1 명 이상 ✓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- 부상자 2명 이상 ✓1년 이내에 동일한 유해요인 -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	❖중대재해 ✓사망자가 1명 이상 ✓3개월 이상 요양 필요 -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✓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- 동시 10명 이상

라) 처벌

구분	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	산업안전보건법
사망 시 처벌	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(병과 가능) 법인: 50억원 이하 벌금	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: 10억원 이하 벌금
그 외 재해 처벌	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: 10억원 이하 벌금	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: 관련 규정의 벌금
징벌적 손해배상	손해액의 5배 이하 (고의, 중과실인 경우)	없음

2.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

1) 안전보건 확보 의무

가. 안전보건 확보 의무

▶ 사업주, 법인,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, 운영,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·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의무

-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
-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
-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

-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나.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

가)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

▶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강조

나) 유해・위험요인 감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 가능한 방안

▶ 반기 1회 이상 이행사항 점검

▶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참고

▶ 사업장별 특성 반영

다)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 배치

▶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또는 산업보건의

▶ 300인 미만 사업장 등 겸직 가능한 경우

라) 안전・보건 업무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

▶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상

▶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 건설사업자

▶ 산업재해 발생 위험도가 낮아 안전보건 전문인력 2명 이하인 경우 예외

마)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이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

▶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

▶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평가 · 관리

바)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 편성

▶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, 시설, 장비 구비

▶ 유해 위험 요인 개선

▶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하는 체계 마련

사) 안전・보건의 확보, 개선에 관한 종사자 의견 주기적 청취

▶ 의견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
의견 반영하여 개선 방안 마련 및 이행 조치

▶ 연 2회,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

▶ 의견청취 방식 제한 없음

아) 재해 예방 등에 대비함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(반기 1회 이상)

▶ 작업 중지, 근로자 대피,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

▶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

▶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

자) 3자 도급 ·용역 ·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, 절차 마련

▶ 기준 및 절차의 이행여부 점검 : 반기 1회 이상
▶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・절차
▶ 안전・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

다. 안전・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가) 안전・보건 관계 법령
▶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것
▶ 종사자의 안전 ·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
나) 의무이행 점검 : 반기 1회 이상
▶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 가능
▶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,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 보고 받을 것
다)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
▶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시행 (인력 배치 및 예산 추가 편성, 집행 등)
라) 유해・위험 작어베 관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점검
▶ 반기 1회 이상 점검
▶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 보고
마) 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
▶ 지체 없이 이행 지시
▶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

라. 원료・제조물 안전
가)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
▶ 인력 배치 · 업무 부여
▶ 예산 편성 및 집행
▶ 조치 여부 점검 : 반기 1회 이상
나) 중대시민재해 우려 높은 원료 ·제조물에 대한 업무 처리 절차 마련
▶ 유해 ·위험요인 주기적 점검 및 위험 징후 대응 조치
▶ 보고 · 신고 절차 등 포함

마. 공주이용시설・공중교통수단
가)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
▶ 공중 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 계획 수립 · 이행
▶ 제3자 도급 ·용역 시 안전·보건 확보 위한 기준 및 절차 마련

2) 직업성 질병

가. 직업성 질병의 정의

▶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 중독과 급성 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등 24가지 질병을 말함

나. 직업성 질병 중 급성 중독

노출 물질 및 상황	증상 및 병증
• 일시적 / 다량 • 염화비닐, 유기주석, 메틸브로마이드, 일산화탄소	• 중추신경계 장해 등
• 납 또는 그 화합물 (유기 납 제외)	• 납 창백, 복부 산통, 관절통 등
• 일시적 / 다량 • 수은 또는 그 화합물 (유기 수은 제외)	
• 일시적 / 다량 • 크롬 또는 그 화합물	• 세뇨관 기능 손상, 급성 세뇨관 괴사, 급성 신부전 등
• 일시적 / 다량 • 벤젠	• 두통, 현기증 구역, 구토, 흉부 압박감 • 흥분상태, 경련, • 급성 기절성 뇌 증후군, 혼수 상태 등
• 일시적 / 다량 • 유기 화합물 - 톨루엔(toluene)・크실렌(xylene) ・스티렌(styrene)・시클로헥산(cyclohexane) ・ 노말헥산(n-hexane)・트리클로로 에틸렌(trichloroethylene)	• 의식장해, 경련 • 급성 기질성 뇌 증후군 • 부정맥 등
• 이산화질소	• 메트헤모글로빈 혈증, 청색증 등
• 황화수소	• 의식소실, 무호흡, 폐부종, 후각 신경 마비 등
• 시안화 수소 또는 그 화합물	• 점막자극 증상, 호흡곤란, 두통, 구역, 구토 등
• 불화수소 · 불산	• 점막 자극 증상, 화학적 화상, 청색증 • 호흡곤란, 폐수종, 부정맥 등
• 인(백린, 확린 등 금지물질) - 또는 그 화합물	• 피부궤양, 점막자극 증상, 경련, 폐부종 • 중추신경계장해, 자율신경계장해 등
• 일시적 / 다량 •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	• 급성위장관계 질병

다. 직업성 질병 중 급성 중독 제외

유해인자 및 조건	질병명
• 디이소시아네이트, 염소, 염화수소, 염산 등	• 반응성 기도과민 증후군
• 트리클로로 에틸렌 • 노출 업무 종사 3개월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 -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 제외 (약물, 감염, 후천성 면역결핍증, 악성종양 등)	• 스티븐스존슨 증후군
• 트리클로로 에틸렌, 디메틸 포름 아미드 등 • 노출 업무 종사 3개월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 -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 제외 (약물, 알코올, 과체중, 당뇨병 등)	• 독성 간염
•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 • B형 간염, C형 간염, 매독, 후천성 면역 결핍증 등	• 혈액전파성 질병

라. 직업성 질병

유해인자 및 조건	질병 명
• 습한 곳에서의 업무	• 렙토스피라증(leptospirosis)
• 동물 또는 그 사체, 짐승의 털・가죽, 그 밖의 동물성 물체, 넝마, 고물 등을 취급	• 탄저, 단독(erysipelas) • 브루셀라증(brucellosis)
• 오염된 냉각수	• 레지오넬라증(legionellosis)
• 고기압 또는 저기압	• 중추 신경계 산소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• 감압병(잠수병) 공기 색전증
• 공기 중 산소 농도 부족한 장소	• 산소결핍증
• 전리 방사선 노출	• 급성상사선증, 무형성 빈혈
• 고열 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의 작업	• 심부 체온 상승 동반하는 열사병

3) 공중이용시설

가. 범위

▶ 실내 공기질법 상의 시설

▶ 시설물안전법상 시설

▶ 다중이용업소법상 영업장 : 1,000㎡ 이상
▶ 그 밖의 시설 (소상공인 사업장, 비영리 시설, 교육 시설 제외)

나. 고려 조건
▶ 대상의 명확성
▶ 공중 이용성
▶ 재해발생 시 피해규모 고려

다. 예시
▶ 연면적 2천㎡ 이상 지하도상가
▶ 연장 5백 m 이상 방파제
▶ 바닥면적 1천㎡ 이상 영업장
▶ 바닥면적 2천㎡ 이상 주유소·충전소 등

4)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재해 발생 사실 공표

가. 안전보건교육 수강
가) 대상
▶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
나) 교육 내용
▶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・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
▶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
다) 교육 방법
▶ 20시간 범위 내 운영
▶ 분기별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 · 기관 대상 교육 대상자 확정
▶ 교육을 받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7일 이전까지 교육 연장 신청
▶ 비용은 참여자 부담
▶ 안전보건교육 기관 등을 통해 교육 가능
▶ 이수 교육 대상자는 안전보건 교육 이수 확인서 발급 요청 가능
라) 과태료
▶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
1차(1천만원), 2차(3천만원), 3차(5천만원)

나.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

가) 공표 대상 및 과정

▶ 중대산업재해로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

▶ 중대산업재해 발생 → 안전보건확보위무 위반 사실 확인 → 형의 확정→ 법무부 장관의 통보 →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공표

▶ 공표하려는 내용 통지

나) 공표 내용

▶ "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공표"라는 공표의 제목

▶ 해당 사업장의 명칭

▶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・장소

▶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

▶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

▶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

다) 공표 방법

▶ 관보, 고용노동부 홈페이지

▶ 1년 게시

3.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

1)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

가. 안전보건관릳체계 구축・이행

▶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 보호

▶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 파악

▶ 지속적인 개선을 하는 일련의 활동

나.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

▶ 근로계약 등에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한 내용이 없더라도

▶ 근로자의 생명 ·신체 · 건강을 보호할 포괄적 의무 있음

다. ESG

▶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

▶ 환경(Environmental), 사회(Social), 지배구조(Governance)

▶ 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는 ESG의 기본

라. 중대재해처벌법 제정

▶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요성 강조

▶ 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명시

▶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→ 경영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

2)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

가.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

▶ 발생한 재해와 상황에 대응하는 임기응변식이 아닌,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해와 사고 등에 실질적인 예방활동이 필요

▶ 실질적인 예방활동 필요

▶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활동

▶ 기업별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

나. 전통정 안전보건활동과 안전보건관리체계

구분	전통적 안전보건활동	안전보건관리체계
동기	수동적 / 처벌 회피	적극적 / 성과 달성
책임	안전보건 담당자	경영자
평가	외부 점검 (고용노동부 등)	자체 점검
목표	처벌 회피	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

다.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의 원칙

▶ 기업의 보유 기계 기구 및 공정과 작업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의 여건에 맞게 구축

▶ 기술적인 역량이 부족하고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기업에서는 기초적인 안전보건 조치부터 시작

▶ 공정이 복잡하고 위험요인이 많은 기업에서는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

라. 소규모 사업장에서 즉시 가능한 안전보건 응급조치

▶ 안전보건을 경영방침의 핵심가치로 함

▶ 작업환경을 최대한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고 정돈

▶ 주요 작업 현장, 휴게시설 안전수칙 게시, 위험한 기계 · 설비 및 장소 안전 표지판 부착

▶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간단하며 효과적인 절차 도입

▶ 모든 구성원이 사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해 격의 없이 논의

▶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실시

▶ 안전보건활동에 적극적인 직원 포상

▶ 안전보건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

3)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점 사항

가. 경영자 리더쉽

▶ 보건에 대한 의지 표명, 목표 정하기

▶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을 배정 (인력 · 시설 · 장비)

▶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 정하기

▶ 구성원의 참여 독려

나. 근로자의 참여

▶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 공개

▶ 모든 구성원이 참여 가능한 절차 마련

▶ 자유롭게 의견 제시 가능한 문화 조성

다. 위험요인 파악

▶ 위험요인에 따른 정보 수집 · 정리

▶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조사

▶ 위험 기계 ·기구 · 설비 등 파악

▶ 유해인자 파악

▶ 위험 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 파악

라. 위험요인 제거・대체 및 통제

▶ 위험요인별 위험성 평가

▶ 위험요인별 제거 ·대체 및 통제 방안 검토

▶ 종합적인 대책 수립 및 이행
▶ 교육 훈련 실시

마. 비상조치계획 수립
▶ 위험요인 바탕으로 시나리오 작성
▶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 계획 수립
▶ 조치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

바. 도급・용역・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
▶ 산업재해 예방 능력 갖춘 사업주 선정
▶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·운영 시,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 보호 가능하도록 함

사. 평가 및 개선
▶ 안전보건 목표 설정 및 관리
▶ 안전보건관리 체계 운영상태 점검
▶ 발견된 문제점 주기적 검토 및 개선